

2025학년도

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모집요강



국제대학교
KOOKJE UNIVERSITY

목 차

1. 산업체위탁과정 1p
2. 지원 자격 1p
3. 인정 산업체 종류 1p
4.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2p
5. 전형일정 2p
6. 전형방법 2p
7. 등록금 안내 2p
8. 제출서류 및 발행기관 3p
9. 지원자 유의사항 3p
10. 제적 기준 3p
11. 학사관리 4p
12. 입학상담 및 문의 4p

산업체 위탁교육

1. 산업체위탁과정

대학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우수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. **(정규 전문학사 수여)**

가.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특례 입학제도

나. 지원자 회사대표와 우리 대학교 간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실시

다. 산업체위탁생은 일반 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 수여

※ 산업체위탁교육 시행 근거

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항,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(교육부예규 제26호)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,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(교육부)에 근거하여 시행

2. 지원 자격

가. 공통사항

-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
 - 입학일 기준(25.3.1)으로 4대보험(국민, 건강, 고용, 산재)가입이 되어있는 자

나. 재직기준

· 입학일 기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
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및 검정고시자는 대학교 -산업체 간 위탁교육 계약서를 통해 대학에 입학 시, 산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.
(직장인 : 4대보험 서류) (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, 납세증명서 각 1부)

· 입학일 기준(25.3.1) 4대보험(국민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 여부

1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증명서 확인으로 인정

3. 인정 산업체 종류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- 방송법 제2조의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-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-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황

4.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학과명	모집정원	수업연한	위탁장	비고
자동차학과	40명	2년	내부	

- ※ 모집인원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지원한 학과의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함
- ※ 위탁교육생의 신분은 정규 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
- ※ 졸업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(3,4학년 과정) 입학가능

5. 전형일정

구 분	일 시	장 소	비 고
원서접수 (방문접수 및 우편접수) ※첨부서류 같이 제출	2024. 11. 11.(월) ~ 2025. 01. 17.(금)	국제대학교 입시홍보처 (국제관 1층)	· 평일 09:00 ~ 18:00 ※ 주말 및 공휴일 접수불가 · 전형료 면제 · 원서 현장비치, 홈페이지 첨부
합격자 발표	2025. 02. 07.(금)	본 대학 홈페이지	https://ipsi.kookje.ac.kr/ipsi/
합격자 등록	2025. 02. 10.(월) ~ 2025. 02. 12.(수)	합격증/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기간	전국 국민은행
추가접수·발표	2025. 02. 13.(목) ~ 2025. 02. 28.(금)	개별통보	2025. 02. 28.(금) 추가합격자 등록마감

- ※ 원서접수 마감 후 모집 학과별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함.
 - 추가합격자는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하며, 연락두절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※ 우편접수 주소: (17731)경기도 평택시 장안로길 56 국제대학교 입시홍보처
 - 접수(제출)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※ 우리 대학 내 다른 학과에 복수(이중)지원은 할 수 없음

6. 전형방법

- 무시험 서류전형 100%(서류심사): 입학원서 및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접수순으로 선발함
- 접수방법: 등기우편 접수 또는 대학 방문접수
- 전형료: 없음

7. 등록금 안내

- 2024학년도 기준 신입생 등록금 내역

모집계열	모집학과명	수업료1	수업료2	계	비고
공학	자동차학과	219,000	3,406,000	3,625,000	2025학년도 등록금 미정

8. 제출서류 및 발행기관

구 분		제출서류	발행기관
전체 공통		산업체위탁교육 지원서	우리대학 소정양식
		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	
		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	
		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	인근 초·중·고 행정실
		재직증명서(직업군인: 복무확인서)	재직산업체
재직 사실 증빙서류	일반산업체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직장가입자)	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(www.nhic.or.kr)
		국민연금 가입 증명서(가입자용)	국민연금관리공단 (www.nps.or.kr)
		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토탈사이트
		산재보험 가입확인서	(https://total.comwel.or.kr)
	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납세증명서	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※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
	농·어업인	농지원부 또는 어업인 허가증명서	지방자치단체

- ※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및 원서는 입학홈페이지(<https://ipsi.kookje.ac.kr/ipsi/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
- ※ 팩스, 스캔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9. 지원자 유의사항

- 입학 이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
 - 입학 전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
 - 입학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- 입학 후 제반사항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을 따름
-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'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'에서 심의 후 결정함

10. 제적기준

- 입학 직전 재직 중인 **산업체를 퇴직한 경우**(2025.02.28. 입학 직전 최종 확인/4대 보험 서류 제출)
 - 입학 직전 이직한 경우, 이직한 산업체의 위탁교육 지원서,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, 재직증명서, 재직사실 증빙서류
각 1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, 별도의 통보 없이 제적처리함
- **매학기 시작 전월**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**재직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**
-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합격한 경우
-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(2학기에 확인)
- 기타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경우와 학칙의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

- 자발적 퇴직 후,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비자발적 퇴직(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) 후,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,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 -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,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기고 퇴직하고 대학 내,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- 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

11. 학사관리

- 학사운영
 - 휴학·재입학·제적, 수업, 성적,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
(단,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)
- 재직여부 확인
 -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4가지 가입증명서를 제출
(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검증)

12. 입학상담 및 문의

가. 전 화

- 1) 입시홍보처 : 031-610-8702
- 2) 자동차학과 : 031-610-8020

나. 홈페이지 : <https://ipsi.kookje.ac.kr/ipsi/>

다. 주 소 : (17731)경기도 평택시 장안윗길 56 국제대학교 입시홍보처

국제대학교 장학제도

1. 교내장학

- 장학금(우리대학 장학금 규정에 따름)
- 문의: 국제대학교 교학처 031-610-8721

장학금 명칭	조건	금액	비 고
산업체위탁장학금	산업체위탁교육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	국가장학금 제외한 등록금 잔액(실 납부금액)의 30% 지급	매 학기 지급

2. 국가장학

- 장학금(한국장학재단 규정에 따름)
- 문의: 한국장학재단 1599-2000(2024학년도 기준 장학금)

장학금 명칭	조건	금액	비 고
국가장학금 I 유형	· 학자금 지원구간 차등지급 ·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	· 1,750,000원 ~ 3,500,000원	한국장학재단 문의
희망사다리 I 유형	· 중소기업 취업 예정자 · 중소기업 기 취업자	· 등록금 전액 · 취창업 지원금 2,000,000원 · 학기당 지급	
희망사다리 II 유형	· 입학 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 · 재학 중 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	· 등록금 전액 (중소·중견기업) · 등록금 반액 (대기업·비영리법인)	

〈산업체 위탁교육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]

■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이며,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E-mail, 추가 연락처, 모집단위(지망학과), 학교정보
[최종학력구분, 재학/출신 고교명, 졸업(예정)연도, 고교 전화번호]
2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목적 :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한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(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)

지원자(만 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/ ☐ 동의하지 않음

[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]

■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중 한 개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※ 근거법령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지원자(만 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/ ☐ 동의하지 않음

[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]

■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수탁업체	위탁업무내용	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	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	기타
국제대학교 충청남도자녀지원사업 사업조합	지원자 정보수정, 합격 여부 확인, 등록금 수납, 환불 및 총원 업무, 안내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메시지 발송	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추가 전화번호, 이메일, 수험번호, 모집단위명, 합격여부, 예비순위, 학교 정보 최종 학력구분, 재학/출신고교명, 출신고교 코드, 졸업(예정)연도, 은행명, 예금주 성명, 계좌번호 등	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	
국제대학교 교학처	장학 선발	이름, 수험번호, 주민등록번호, 모집단위명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
지원자(만 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/ ☐ 동의하지 않음

[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]

■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	위탁업무 내용/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	제공 받는자의 보유·이용기간	기타
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고등학교	대학알리미에 진학정보 제공	성명, 등록대학, 모집단위명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한국장학재단	장학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 제공	이름, 수험번호, 주민등록번호, 학교, 등록금액, 등록마감일자, 입학일자, 환불계좌번호, 장학금액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
지원자(만 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☐ 동의함 / ☐ 동의하지 않음

[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, 전형일자 확인]

- 대입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,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?

☐ 확인함

[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방지에 관한 확인]

- 대입 허위 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?

☐ 확인함

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수험생 본인이 직접 (동의함 / 동의하지 않음)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확인:

(서명)

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

국제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와 회사명 (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)은(는)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위탁교육의 과정과 모집단위별 인원)

-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- ②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연도별	학과(계열)명	위탁생 수	성명	위탁교육장
2025		명		본교

제 3 조 (위탁생의 자격) 고등학교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산업체 재직 중인 자로 한다.

제 4 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-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- ② 본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.

제 5 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-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
다만,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.

제 6 조 (산업체의 시설사용) 산업체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경우 산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)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 8 조 (교육비 및 등록)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10 조 (위탁생 제적처리 기준)

- ① 입학직전 협약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
- ② 산업체 퇴직 시 제적 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
 -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공적 증명서 증빙 기준
- ③ 매 학기 시작 전월 위탁교육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, 재직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④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(2학기에 확인)

제 11 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산업체가 대학교에 대해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위탁교육 협력위원회)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하여 위탁교육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준용)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,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20 년 월 일

[대학]

주 소 경기도 평택시 장안로길 56

기관명 국제대학교

대 표 총장 임 지 원

(직인)

[산업체]

주 소

산업체명

대 표

(직인)